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 중증 질환자의 자녀는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형제·자매가 중증 질환으로 장기간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중증 질환자의 형제자매인 영유아를 추가하는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의 제명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내 조문을 정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에 있어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른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3년 하한을 폐지하며,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를 전자문서로 보존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의 편의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8. 15. ~ 9. 30.) 예정

3) 행정규제 : 협의 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 중 “위하여 별지 제17호의2 서식의”를 “위하여”로, “명부”를 “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9조제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형제자매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별표 1 제3호가목4)아)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로, 같은 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본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로, 같은 항 본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같은 항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같은 항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로 하고, 같은 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같은 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로 하고, 같은 아)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별표 8 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8의2 제1호다목 단서 중 “3년 이상 5년”을 “5년”으로 한다.

별표 8의3 제1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형제자매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별지 제17호의2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3(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 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 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7 호의2서식의 이용 신청자 명부 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8조의3(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 ----- ----- ----- <u>위하여</u> ----- ----- <u>명부</u> <u>(전자문서를 포함한다)</u> ----- -----.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 ② (생 략) ③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 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1. ~ 9. (생 략) <u><신 설></u>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9. (현행과 같음) <u>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u> <u>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u> <u>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u> <u>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u> <u>사람의 형제자매 중 교육부장</u> <u>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u>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